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1992. 10. 24.
제안자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1. 提案經緯

가. 1992년 10월 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영규의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2. 提案理由

가.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, 91. 9. 9.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법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主要骨子

가.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가축사육의 제한등)로 함 (안 제6조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2항”을 “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가축사육의 제한등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 (생략)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가축사육의제한 등)</u>-----</p>